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, 서울로봇
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과학관 명칭 및 위치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추가(안 제3조)
- 나. 조례 일부개정('24.5.20.)에 따른 19세 이하 관람료 면제를 본문에
명문화하여 현행화(안 제6조제1항제3호)
- 다.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신설(안 제6조제1항제13호)
- 라. 권한의 위임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명확화(안 제18조)
- 마. 법령·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문구 등 정비(안 제6조제1항제9호,
제6조제2항제1호, 제16조 및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23조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5. 3. 5. ~ 3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경제실 경제정책과 이정훈 (☎ 02-2133-5227)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이 조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“과학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립과학관: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
2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(창동)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6세”를 “19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,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를 “수급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13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
제16조 중 “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”를 “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장”을 “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명칭 및 위치) 서울특별시립 <u>과학관(이하 "과학관"이라 한다)</u> <u>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립과학관"</u> <u>이라 하고,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</u> <u>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에</u> <u>둔다.</u></p>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6세</u>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9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 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<u>국</u> <u>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</p> <p>10. ~ 1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13. (생략)</u></p>	<p>제3조(명칭 및 위치) 이 조례에 적용 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"<u>과학관</u>"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립과학관: 서울특별시</u> <u>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</u></p> <p>2. <u>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: 서울</u> <u>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</u> <u>(창동)</u></p>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19세</u> ----- ---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----- ----- 수 급자</p> <p>10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「<u>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</u> <u>률</u>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<u>장기복무 제대군인</u></p> <p>14. (현행 제13호와 같음)</p>

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

2. ~ 5. (생략)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,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-----

-----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준용) -----

-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
관리 조례」-----

-----.

제17조(시행규칙) -----
필요한 -----
--.

제18조(권한의 위임) -----

-----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하여 제6조(관람료 감면) 제2항의 관람료 감면대상에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'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시행기간 : 비용은 2025년 5월 19일(조례 공포·시행예정일)부터 발생
- 2024년 과학관 매표수입(2개소) : 66,441천원
- 대상시설 및 금액

대 상 시 설	입장료
서울특별시립과학관	2,000원 (성인기준)
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	2,000원 (성인기준)

- 과학관 성인 관람객 방문비율 : 1.03%
 - 20~64세 관람객(67,176명) / 20~64세 서울시 인구(6,540,000명) = 1.03%
 - ※ 2024년 시립과학관 20~64세 관람객 수 : 67,176명
 - ※ 2024년 서울시 20~64세 인구 수 : 6,540,000명
-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객/년 추정 : 12,000명 × 1.03% = 124명/년
 - ※ 2024년 서울시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 : 12,000명
- 비용추계 산식
 - 1차연도 : 124명 × 2,000원 × 225일/365일 = 152,000원
 - 2차연도 : 124명 × 2,000원 = 248,000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합계
수입	감면입장료		152	248	248	248	896
	소계(b)		152	248	248	248	896

4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없음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합계
구분	국비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-	-	-	-	-
	세외수입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
	민간	-	-	-	-	-
	기타	-	-	-	-	-
	합계	-	-	-	-	-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이정훈(02-2133-5227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항목별 비용추계 방법

- (감면비율) '24년 성인관람객 67,176명 / 市성인인구 6,540천명 = 1.03%
- (감면인원) 市거주 장기복무 제대군인 12,000명 × 1.03% = 124명/년
- (감면비용) 124명/년 × 2천원 = 약 250천원/년

2. 비용추계 산출 기초자료

- 최근 3년 과학관 성인 관람객 및 전체수입 현황 ('24년 성인 관람객 67,176명)
- 2025년 서울시립과학관 종합 운영계획(총무과-1175, '25.2.5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합 계	'22년	'23년	'24년
관람객(성인)	125,720	25,996	32,548	67,176
관람수입(전체)	212,984	70,393	79,018	63,573

※ '24.5.20. 서울시립과학관 조례 개정 이후 19세 이하 관람료 무료

※ '24.8.20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

- 서울시 인구통계 (20~64세 인구 6,540천명)
- '24년 4/4분기 서울특별시 등록인구통계(열린데이터광장, data.seoul.go.kr)

(단위 : 천명)

구 분	합 계	20~24	25~29	30~34	35~39	40~44	45~49	50~54	55~59	60~64
인구	6,540	582	818	822	669	728	691	794	730	706

- 지역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현황 (서울시 약 12,000명)
- 국가보훈부 통계 자료(제대군인정책과-338, '25.2.26)